

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	
				집	휴대전화	전자우편

약국	명칭	등록번호
	소재지	요양기관기호
	연락처(전화)	(팩스)

변경사항			
항목	이미 등록된 사항	변경등록신청 사항	사유
약국의 명칭			
약국의 소재지			

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담당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약국개설등록증(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 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	수수료 5,000 원
------	--	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한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됩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1. 검토 2. 소재지 변경 시 시설조사	→	기안·결재	→	등록증 뒷면 기재	→	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	---	-----------	---	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시·군·구